

공공기록물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류 신 애*, 이 승 휘**

1. 머리말
2. 재평가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 이유
 - 1) 현행 평가 제도의 한계
 - 2) 현행 재평가 제도의 문제
 - 3) 주제 기반 평가를 통한 재평가 보완의 필요성
3.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 1) 재평가 보완 방법론
 - 2) 재평가 보완 모델
4. 맺음말

[국문초록]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

*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기록관리전문요원(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 또한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재평가, 주제 기반 평가, 평가심의회, 기록관리기준표

1. 머리말

기록을 관리하고 남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을 통하여 당대 사회를 재현하는 것이다¹⁾. 어떤 기록이 폐기되지 않고 남는

1) 기록의 재현가능성에 대해 여(Geoffrey Yeo 2007)는 기록은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활동을 재현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기록은 그 자체가 많은 재현의 종류 중 하나일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이

다는 것은 그 기록이 지속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오래 보존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즉 평가는 기록의 가치를 기반으로 보존 기간을 결정함으로써 미래에 남을 당대 사회상을 결정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평가 시기, 주제, 판단 기준, 방법론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 때문에 각 나라는 합리적이며 일관성 있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거시평가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현대 기록관리 환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평가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생산 이전에 수행하는 기능 기반 평가만으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록의 가치는 기록이 생산된 배경을 비롯한 여러 지점에서 발생되며, 업무 기능의 중요도에 따라 기록의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것은 그 외의 부분에서 발현되는 가치를 지닌 기록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평가 단계가 기록의 모든 가치를 잘 반영하여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한다. 기록의 가치는 보존기간이 결정된 이후에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기록학의 평가 영역에서 ‘영구 보존 가치(archival value)’라는 말 대신 ‘지속적 가치(continuing value)’라는 말이 더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²⁾.

다른 재현과 구분되는 특징으로, 특정한 기록을 생산한 활동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이 지속적으로 재현할 수 있자는 점에 주목하였다.-류한조 2009,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건축 문화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p. 6.에서 재인용.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재평가³⁾이다. 과거의 재평가는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는 기록을 가려내어 폐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존 비용을 줄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현대 기록관리환경에서 재평가는 평가 단계의 문제를 보완하는 업무가 될 수 있다. 업무 기능 분석 중심의 초기 평가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 평가 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해진 기록을 찾아, 원래의 평가 결과대로는 폐기되어야 하였던 것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현대 재평가의 목적이라고 본다.

한국의 평가 제도는 1차적 가치와 2차적 가치를 가진 기록을 모두 선별하여 보존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러나 현행 평가 방식으로는 그 지향하는 바를 이룰 수 없다. 기록관리기준표로 대변되는 첫 평가는 기능 기반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능 기반의 평가는 2차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기 때문이다. 재평가 제도는 평가심의회를 이용한 내용 평가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는데, 충실하게 내용 평가를 수행한다고 하여도 가치를 지닌 기록을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연구하고,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서

2) Richard Pearce-Moses,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630 [2009, 12. 18 참고])

3) 일반적으로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소장 기록을 계속 보존할 것인지 판단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미 내려진 평가를 다시 검토하는’ 기관은 모두 ‘재평가’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현재 기록관에서 평가심의회를 거쳐 기록물을 폐기 또는 계속 보존하기로 결정하는 단계를 ‘재평가’라 칭하였다. 본문에서 ‘재평가’는 주로 기록관에서 수행하는 재평가를 지칭한다.

현재의 평가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재평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지금까지 재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에 대한 연구 성과는 거의 없다. 김명훈⁴⁾이 현행 전체 평가 제도의 체계와 방식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에만 재평가도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김명훈은 현행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철저한 업무 분석과 이원적 평가 체제라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천권주·김효민은 한국의 평가·재평가 제도를 검토하고 육군 사례를 들어 재평가 각 단계에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⁵⁾. 그러나 재평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찰하기 보다는 각 단계별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기록물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례를 제시한 연구는 있었지만, 대부분 재평가 제도의 근본적 의미를 살리기 보다는 평가 기준의 구체화·평가 인력 확충·예산 증액 등을 통한 1차적 해결 방안만을 제시하였다.

4)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5) 천권주·김효민, 2009,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009년 6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한국기록학회.

2. 재평가 제도를 보완하여야 하는 이유

1) 현행 평가 제도의 한계

공공기록물 평가 제도의 중심은 기록관리기준표에 있다. 기록관리기준표는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별로 업무 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표이다(표1 참조). 이 표가 기록을 이관하거나 폐기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단위과제별로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과정을 생산 이전 평가라고 볼 수 있다.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은 공공기관에서 설정하되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⁶⁾.

조직분류	업무분류체계(BFM)					기록관리항목					
	처리과명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업무설명	기록물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기능분류 고유/공통
도시건축국 > 지역정책관 > 교육복지과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교육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유치 및 교육환경조성 방안 마련	도시의 지역기능 확보, 조기 활성화 및 인적자원의 양성 및 개발을 위하여 우수대학을 유치할 통한 교육환경 조성방안 마련	중영구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고유
도시건축국 > 지역정책관 > 교육복지과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교육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사립학교 유치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사립학교 유치를 추진	중영구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고유
도시건축국 > 지역정책관 > 교육복지과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교육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학교·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설치	개인별 적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 학교시설을 설치	중영구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고유
도시건축국 > 지역정책관 > 교육복지과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문화·체육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등을 설치	중영구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고유
도시건축국 > 지역정책관 > 교육복지과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문화·체육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문화·체육 시설의 설치 계획 수립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종합병원 등을 설치	중영구	기록물 보존업무 처리기준에 따름	고유

[표 1] 기록관리기준표 예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8년 6월 16일 고시)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기록관리기준표)

기록물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단위인 단위과제는 행정 업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업무간 유사성 및 독자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소기능을 세분화한 업무 영역을 말하며,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마지막에 위치한다. 단위과제 아래에는 복수의 과제관리카드가 있을 수 있으나 보존 기간은 단위과제의 속성을 상속한다.

단위과제가 속해 있는 정부기능분류체계는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범정부적으로 표준화한 기능분류체계와 각 부처의 과제관리를 위한 목적별 분류체계로 구성된 분류체계를 말한다⁷⁾. 행정자치부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으며, 기획예산처에서 구축 중이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국무조정실에서 기관 평가를 위하여 진행 중이던 분류체계와 통합하여 완성하였다⁸⁾.

정리하면, 한국은 업무분류체계인⁹⁾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그대로 기록분류체계로 수용하고, 가장 작은 단위인 단위과제에 보존기간을 책정하여 기록 관리에 활용한다. 즉, 기능 기반의 평가를 지향하는 제도가 수립·시행되고 있다.

기능 기반의 거시 평가는 현대 기록관리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능 기반 평가는 기록이 지니는 가치를 한 번에 모두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업무 기능은 다른 업무의 연관성 속에서 수행되기 때문이다¹⁰⁾.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7)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8)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p. 3.

9) 정부기능분류체계가 완전한 업무분류체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기록학연구』 19, 한국 기록학회 참고.

10) 2004년에 정부업무관리(BRM)시스템구축을 위한 BPR_ISP 사업 완료 요약 보고

관련된 정부 부처의 BRM 중 일부를 발췌한 표이다.

[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관련되는 업무분류체계

업무분류체계 (BRM)						
조직 분류	기능분류					
기관명	1레벨 정책분야	2레벨 정책영역	3레벨 대기능	4레벨 중기능	5레벨 소기능	6레벨 단위과제
국무조정실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정책조정	정책조정수행	농수산건설교통분야정책조정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지원
행정자치부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공무원지원	연금복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리감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공무원주거대책 등 지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	교육 일반	교육인적자원행정지원	교육시설지원	행정중심복합도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학교설립추진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공간문화 조성	문화도시 공간환경 조성	행정중심복합도시 문화도시화
환경부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전 기반육성	물환경 연구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전 환경성 검토
환경부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전 기반육성	환경진단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환경분야(수질)
환경부	환경보호	환경보호 일반	환경보전 기반육성	환경진단연구	행정중심복합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환경분야(토양)
건설교통부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	행정중심복합	행정도시건설

서에 따르면 2004년에 전체 부처의 유관기능 등록비율은 133%였다(유관업무를 등록한 부처만을 대상으로 할 때 통계). -행정자치부, 2004, 정부업무관리(BRM)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_ISP사업완료요약보고서, p. 42.

통부				도시건설	도시 건설 지원	지원
건설교통부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계획	도시기본 구상 및 기본계획 수립
건설교통부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 계획	행정도시건설 계획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도시정책	청사이전지원	정부청사 건설사업	청사 건립사업의 공정관리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균형발전	교육	선진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유치 및 교육환경조성 방안 마련

위처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큰 기능은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단위업무로 수행된다. 학교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건설교통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현행 평가 제도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현행 평가는 업무분류체계의 최하위인 단위 과제에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을 책정하는 주체는 각 기관인데, 현재의 평가에는 여러 기관의 업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각 기관마다 특정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 중 어떤 기록을 한시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기록을 장기 보존할지에 대한 판단을 다르게 내릴 수 있다. 같은 활동과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여러 곳일 경우, 그 과정에서 생산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다.

기록관리기준표의 기반인 업무기능분류체계가 완벽한 업무

기능분류가 아니라는 점, 분류기준표의 기록물철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주체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더하면 평가 단계를 보완하는 절차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2) 현행 재평가 제도의 문제

현행 재평가는 기록관리기준표에 책정된 보존 기간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결정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로, 기록물이 생산된 이후에 실제 내용을 검토하여 평가함으로써 생산 이전의 기능 기반 평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처리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2년 내에 기록관으로 이관된다. 이 중에서 기록관리기준표상의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은 폐기 시점이 도래하면 기록관에서 재평가 대상이 된다. 재평가는 처리과 의견 조회,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심의, 평가심의회를 거쳐 이루어진다. 평가심의회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할 때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가 절차로, 공공기록물법은 평가심의회에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5인 이내의 민간 전문가'(단, 통일, 외교, 안보, 수사, 정보 등의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의 경우 민간 전문가는 1인 이상)를 포함하도록 명시한다.

평가심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재평가의 지향점은 국가기록원이 2007년 발간한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보고서¹¹⁾에 나타난 평가지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국가기록원이 '각

11)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별책 2 기록관리현황 평가도구」.

영역의 업무분석을 바탕으로 해당 영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식별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업무 절차를 도출하여 산출한¹²⁾결과인 이 보고서에서 재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평가 지표는 다음과 같다¹³⁾.

[표 3] 기록관의 기록관리현황 평가(evaluation) 항목 중 '평가'영역

평가 항목	평가			
	241	241-1	242	243
평가 지표	(기록관) 기록물 평가심의회 민간 전문가 수 준수 여부(1)	(특수기록관) 기록물 평가심의회 민간 전문가 수 준수 여부(2)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여부	평가심의회에 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원문 제공 여부
평가 기준	외부 민간 전문가 수	외부 민간 전문가 수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여부	평가심의회에 재분류 대상 기록물 목록에 대한 원문 제공 여부
평점 부여 방식	A: 2인 이상 포함: (5)	O: 1인 이상 포함: (5)	A: 별도로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3)	O: 목록과 원문 모두 제공: (2)
	B: 1인 포함: (2)	X: 없음: (0)	B: 기록관 운영규정 내에 포함하여,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2)	X: 목록만 제공: (0)
	C: 없음: (0)		C: 운영규정 미제정: (0)	
배점	5	5	3	+2 가산점
제출 자료	민간 전문가 여부 확인 가능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 명단	민간 전문가 여부 확인 가능한 기록물 평가심의회 위원 명단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원문 제공 명시된 평가심의회 계획서
산출 근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12)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p. 7.

13)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별책 2 기록관리현황 평가도구」, p. 13.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8.1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 가이드 8.1		
KRMSOP022 보존기간 재평가	KRMSOP022 보존기간 재평가		KRMSOP022 보존기간 재평가

(출처: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p. 13.)

위 표는 국가기록원이 기록물평가심의회에 포함된 민간 전문가 수,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여부, 평가심의회에 기록물 목록에 대한 원문 제공 여부를 기록물 재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간 전문가의 존재는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기간 내부의 업무 담당자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2차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민간 전문가들에게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에서는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고 설명할 뿐 자세한 위원 자격을 규정하지는 않는다¹⁴⁾. 평가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여부가 중요한 것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평가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것은 원문 제공 여부가 재평가를 평가(evaluate)하는 중요한 항목이라는 점이다. 원문을 제공한다는 것은 심의회 위원들이 가능한 한 평가하여야 하는 기록 내용을 보고 평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평가심의회는 현실적으로 내용 검토를 통한 기능 평

14) 평가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답변(국가기록원 홈페이지>묻고 답하기).

가 보완이라는 본 목적을 살리지 못한다. 문제는 심의회 구성 단계부터 발생한다. 현재 법령상으로 민간 위원은 기관에 따라 1명 또는 2명을 위촉하는데, 이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을 포괄하기에는 부족한 수이다. 해당 기관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위원들로 평가 심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기록의 2차적 가치보다는 1차적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재평가가 각 기관마다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또한 평가심의회 의미 퇴색시킨다. 공공기록물법은 재평가의 빈도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이는 각 기관의 평가심의회 운영 규정에서 나타나는데, 다른 기관 또는 국가기록원과의 협력 관계에 대한 언급을 찾기는 어렵다.

재평가가 각 기관별로 다른 시기에 별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재평가 제도에는 기록물관리기관 사이에 서로 평가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의미이다. 2차적 가치의 변화를 공공기록물 재평가에 반영하려면 전 기록물 관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현재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한시기록물 재평가에 있어서 기록관과 국가기록원은 단절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지침 중 「보존기간 재분류 지침」¹⁵⁾,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¹⁶⁾, 「2008년도 기록물 관리 지침」¹⁷⁾에도 국가기록원의 역할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에서 이관하는 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해오는 역할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재평가 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평가심의회 위원

15) 국가기록원 수집관리팀, 2005, 「보존기간 재분류 지침」.

16) 국가기록원, 2007,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

17) 국가기록원, 2008, 「2008년도 기록물 관리 지침」.

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며, 실제 기록의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기능 기반 평가를 보완하여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행 재평가는 평가 단계의 보존기간 책정 결과를 의미 있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3) 주제 기반 평가를 통한 재평가 보완의 필요성

현대 기록 관리 환경에서 재평가는 평가 시점과 재평가 시점 사이의 가치 변화를 포착하여 기록관리프로세스에 반영하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평가 단계에서는 보존 기간이 낮게 책정되었던 기록을 찾아 지속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록관의 현행 기록물 재평가 제도는 원래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평가 단계에서는 기능의 중요도를 해당 기록물에 적용시켜 보존 기간에 책정한다. 이 때 기록은 생산되기 전이므로 업무 기능 외의 다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못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단계가 재평가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적 문제 때문에 재평가를 통해서 평가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즉, 현재로서는 재평가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를 책정했던 평가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록은 생산, 획득, 조직, 다원화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한 활동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집단 기억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당대의 사회상 및 집단 기억을 구축한다는 목적 아래에서 기록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어떤 기록으로 당대 사회상을 대표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존재한다. 어떤 기록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는 사회의 변화와 함께 바뀔 수밖에 없다. 사회의 변화에 따른 기록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여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기록의 가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대 사회 구성원의 공감대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보고, 정기적인 주제 기반 평가를 통하여 현재의 평가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3. 재평가 제도 보완 방안

1) 재평가 보완 방법론

평가는 주관적인 과정이다. 때문에 의미 있는 재평가 결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를 규정하고, 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⁸⁾. 특히 정부 기관이 생산한 기록물 중 어떤 기록을 남겨 나중에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재현할 재료로 삼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에는 결과에 대한 설명책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대한 사람들의 공감대를 찾고 평가에 적용하는 절차가 재평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종적으로는 특정한 주제와 관련된 기록에는 생산 기관과 업무 기능이 서로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존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가 기억하여야 하는 모습을 온전히

18) Terry Cook은 평가 이론은 사회적·조직적 기억을 위한 기록의 가치를 다루며, ‘가치’에 해당하는 적절한 개념이나 이론이 없으면, 어떤 평가 전략이나 방법론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Terry Cook,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p. 7.

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당대 사회상을 기록으로 남기려는 시도로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발전하였다¹⁹⁾. 이 전략은 기록의 가치를 사회적 맥락에서 찾고, 기록을 통하여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비록 구체성 부족 등의 비판을 받았으나, 다양한 주체들이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대하여 참조할만하다.

특정 사건이나 기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의 사례로 영국의 전략적 선별 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이하 OSPs)이 있다. OSPs는 외부 의견 반영을 통한 참여형 국가기록 수집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국립기록청(TNA)이 개발한 제도로, 주제 기반의 평가에 의한 ‘특화된 선별 절차’라고 할 수 있다²⁰⁾. 여러 정부 기관이 관련되어있는 주제에 대한 기록, 또는 개별 정부기관과 조직에서 생산되는 기록에 대하여 수집 정책에서 정의한 평가 지표를 적용시킨다. OSPs는 일반적으로 공공 컨설팅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확정된다²¹⁾. 이 제도는 기존의 그리그시스템에서 2차 평가 시 국립아카이브즈가 기록물 센터의 재검토 담당자에게 가치 평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든 지침이 상당 부분 변화·발전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²²⁾.

19) Helen W. Samuels, 1991-92, 「Improving Our Disposition: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3(Winter 1991-92),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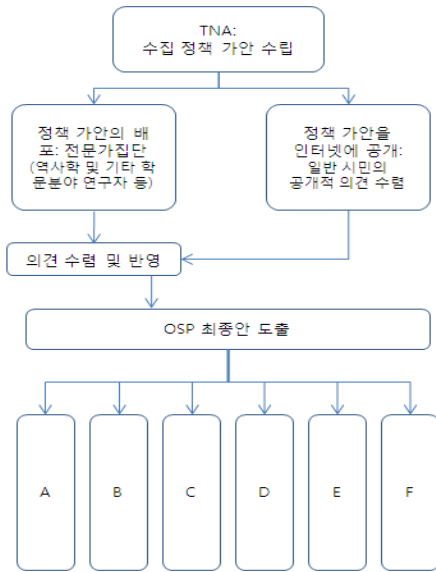
Larry J Hackman and Joan Warnow-Blewett,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Vol.50, Winter 1987.

20) 이승억, 2008, 「전자기록의 평가선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기록인』 4, 국가기록원, p. 14.

21)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ospintro.htm> [2008년 11월 6일 참고]

OSPs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²³⁾.



[그림 1] OSP 수립 절차

TNA는 수집과 처분 정책을 바탕으로 OSP 수립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역사학 및 기타 학문 분야 연구자 등 전문가집단에 자문을 구할 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 공개하여 의견을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 OSP 최종안을 도출하고, 수립된 OSP는 공개하여 적용한다. 현재 (1) 중앙 정부와 헌법, (2) 국방, 보안, 정보 수집, (3) 환경, (4) 재정 문제, (5)

22) 유혜림, 2007, 「전자기록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 48.
 23) 유혜림, 2007, 「전자기록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p. 46.

인종 문제, (6) 법과 질서, (7) 국외, (8) 사회와 교육 문제, (9) 무역과 산업과 관련한 총 47개의 OSP²⁴⁾가 수립되어 있다²⁵⁾. TNA는 OSP의 정기적인 갱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 연구는 다큐멘테이션 전략 및 OSPs제도의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기록원이 재평가할 주제를 선정하고 평가 틀을 세움으로써 기록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제안한다. 이 방법을 통하여 기능 기반 평가를 지향하는 기록관리기준표와 미시 평가를 지향하는 재평가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특정 활동과 관련된 기록이 파편화되지 않고, 모여서 특정 시대상을 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관마다 몇 명에 불과한 평가 주체들이 전 기관의 기록에 대한 평가 결정을 내리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평가 보완 모델

당대의 사회적 합의를 기록으로 남겨 재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와 수행 방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현행 평가와 재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평가 모델로 크게 주제 선정에 위한 자문 위원회 구성, 주제 선정, 재현 단위 결정과 평가, 가이드라인 제시의 5단계를 구상하였다. [그림2]는 위원회의 주제

24) OSP라 하면 특정 기능이나 주제, 기관으로부터 생산되는 기록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의미한다. OSPs는 그러한 지침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 기관에 대한 지침을 뜻할 경우 OSP, OSP를 수립하는 제도를 의미할 때에는 OSPs라고 표기하였다.

25)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osp-subject.htm> [2008년 11월 6일 참고]

선정부터 재현 단위에 대한 평가까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각각의 단계를 통하여 기능 기반의 거시 평가 및 미시 평가의 한계 보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통한 당대 사회상의 재현이라는 평가의 목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당대 사회를 대표할 주제가 무엇을 기억할 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는 평가에 관여하든 하지 않든 기록 관리의 이해관계자이다²⁶⁾.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사회의 기록 유산을 형성할 기록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행정학, 과학, 미디어학, 경제학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의는 물론 기관 상호간 혹은 학제간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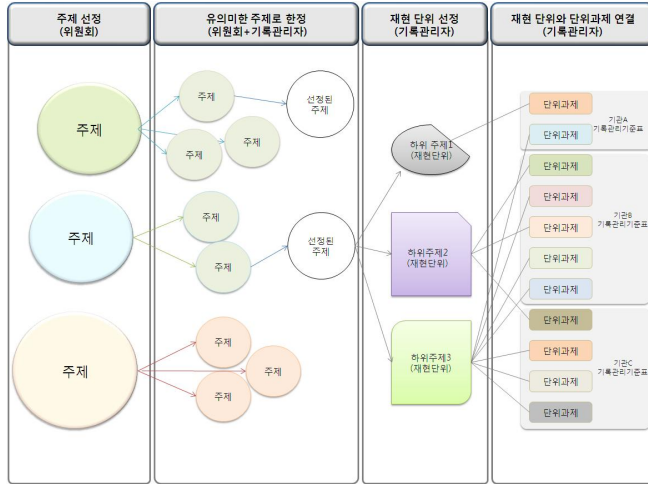
둘째, 재평가를 총괄하는 주체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이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의미 있는 평가 주제를 선정하며, 평가 결과를 기록 보존 기간 재책정으로 연결시키는 일을 담당한다. 재평가는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국가기록원은 재평가를 위한 전담 팀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재평가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재평가 빈도는 1년에 한 번이 적절하다. 어떤 기억을 당대 사회의 모습으로 남겨야 하는지는 당대 구성원들이 그 시대를 온전히 기억하고 있을 때 결정하여야 한다. 특정 시대에 대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곡된다. 또한 기록의 보존

26) Edited by Sue McKe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2005,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p. 125.

27) F. Gerald Ham 저,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p. 32.

기간은 1, 3, 5, 10, 30, 준영구, 영구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기록 관리기준표의 보존 기간에 따라 1년 보존 기록이 폐기되기 전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림 2] 재평가 보완 모델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

재평가의 첫 단계는 전년도 사회의 어떤 모습을 다시 평가할 지 선정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일이다.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각자 특정 영역의 전문가로서,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 중 중요한 키워드나 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재평가의 전 과정을 수행할 경우 다른 영역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포착하고, 선정된 주제의 중

요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여러 기관과 개인들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기록은 지속적으로 활동을 재현하는 증거로서, 신뢰성 있는 집단 기억으로 발전한다. 다양한 영역과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자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상을 균형 있게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들의 역할은 전년도에 있었던 일 중 중요한 주제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시된 주제 중에서 평가할만한 유의미한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위원들과 기록관리전문요원이 함께 수행하도록 한다. 이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반영하되 어떤 주제를 평가할 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내림으로써, 전문가 그룹 내의 논의가 제한된 영역의 특정 관심만을 반영하게 될 수도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²⁸⁾.

평가할 주제 선정

주제 선정 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전년도에 주요 이슈가 되었던 주제를 선정한다. 이 때 주제를 선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데, 이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영구 보존 기록의 조건을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공공기록물

28) 이승억은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록화의 영역은 절차상 다양한 전문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의 기록화는 임의로 정한 주제나 분야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제한된 영역의 특정 관심을 반영한 대표성에 흠이 있는 주관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라고 한계를 지적하였다.-이승억,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한국기록학회.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에서 특히 재평가 시점에서의 판단이 중요한 항목을 주제 선정 기준으로 반영한 표이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한 핵심 업무
3. 국가나 지역사회의 역사 경험
4. 국민의 건강 증진,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및 사건 등
5. 2009년에 결정되거나 변경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책과 제도
6. 인문·사회·자연 과학의 중요한 연구 성과와 문화예술분야의 성과물로 국민이나 기관 및 단체, 조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7. 공공기관의 조직구조 및 기능의 변화, 권한 및 책무의 변화, 기관장 등 주요직위자의 임면
8. 일정 규모 이상의 국토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공사
14. 대통령, 국무총리의 주요 정책
16. 다수 국민의 관심 사항이 되었던 주요 사건 또는 사고
20.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21. 외국의 정부기관 혹은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협상, 교류활동
23.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

국가기록원은 전문가들이 이슈를 선정하는 동안 일반 시민들의 생각하는 중요한 주제도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OSPs 수행 과정에서 일반 시민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대신하는 단계이다. 언론사가 뽑은 국내 10대 뉴스, 언론사 사이트와 검색 포털의 1년간 종합 검색 순위, 정보공개청구 통계, 도서관의 대출 통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결과와 함께 전문가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선정한 주제를 분석하고, 그들과 협의하여 재평가할 주제를 선정한다. 주제 선정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선정 과정에

서 각 분야 전문가들 간에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 큰 원칙을 세워서 합의를 이끌어내어야 한다.

주제를 선정할 후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전년도의 그 일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기관은 어디인지, 연관되어 있는 기능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그 사건 또는 현상을 다큐멘테이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록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주제를 한 단계 구체화시킬 수 있다.

재현 단위 결정과 평가

이 모델에서 중요한 것은 주제를 세분화하여 그 중에서 재현 단위를 설정하고, 그 재현 단위에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처럼 주제 분류 체계에서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단위로, 특정 활동을 유의미하게 보여줄 수 있는 세부 주제를 ‘재현 단위’라고 명명하였다.

기록관리전문요원은 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선정한 주제를 세분화한다. 그 후 어떤 세부 주제를 평가 단위로 삼을 것인지, 즉, 어떤 세부 주제와 관련된 단위 과제의 집합이 그 활동을 재현할 수 있는 유의미한 단위가 될 지를 결정한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활동을 기록을 통하여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가, 즉, 후대에 보여주어야 하는 기록이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한 후 그에 맞추어 기록의 보존 기간을 책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기능 기반 분류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와 주제 분류

체계의 세부 주제는 서로 유사할 수 있으나, 어떠한 분류 방식에 속하는지에 따라 보존 기간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절차는 같은 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동일한 재현 단위에 속하지만 기록관리기준표 상으로는 서로 다른 보존기간을 부여 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보존 기간이 동일하도록 맞추어주는 과정이다. 이를 통하여 과거의 어떠한 활동을 온전하게 재현할 수 있게 된다.

재현 단위를 결정한 다음에는 그 재현 단위로 묶여진 단위과제들을 업무 기능이나 내용이 아닌, 재현 단위가 되는 주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의 활용

주제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국가기록원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기록관에 제공한다. 기록관에서는 기록의 보존 기간이 만료될 때 수행하는 재평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세부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록관의 기록관리전문요원은 매년 새로 제시되는 재평가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보존기간 재책정 대상에 해당되는 기록을 검토하여 재평가 안을 작성한다. 그 후 해당 기관의 업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의뢰한다.

평가심의회 위원들은 국가기록원의 가이드라인, 기관에서 자신이 맡은 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 생산현황,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보존기간 재책정안을 검토한다. 검토 결과는 심의회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 및 위원들이 함께 논의를 거쳐 확정 짓는다.

국가기록원은 각 기록관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검토한다.

기록관의 기록관리전문요원은 확정된 결과를 해당 기록의 보존 기간에 적용한다. 이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기록이 발생하면, 처리과에 업무 진행에 해당 기록이 필요한 지 확인한다. 처리과에서 별도의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평가심의회를 거쳐 조정된 보존기간에 따라 기록을 폐기한다.

평가 결과의 기록화

재평가의 전 단계에서, 모든 절차와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중요하다. 국가기록원이 주제를 기반으로 재평가를 수행한 과정은 그 자체로 그 해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될 수 있다.

자문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 전문가 집단인 자문 위원들이 제시한 주제, 일반인의 관심사에 대한 재평가 팀의 조사, 주제 세분화와 평가 도출 과정 등이 모두 기록으로 남기고 영구 보존한다.

4. 맺음말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 또한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평가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재의 평가와 재평가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선정한 주제 중에서 유의미한 주제를 위원회와 기록관리전문요원이 함께 이끌어내고, 그 주제를 다시 분석하여 ‘재현 단위’를 도출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그 후 결정된 재현 단위에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그 재현 단위와 관련 되는 단위 과제들을 맵핑하여 재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특정 활동을 재현하는 데 필요한 기록에 동일한 보존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재평가 과정을 모두 기록화 함으로써, 그 자체가 당대를 반영하는 기록이 되게 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현재 평가와 재평가가 그 목적에 따라 이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재평가 보완 모델이, 철저하지 못한 업무 분석 등 현실적 문제 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글은 기존과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보다 나은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글의 논의가 향후 평가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999.1.29 법률 570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20789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명변경> [전부개정 2007.4.5 행정자치부령 380호]
- 국가기록원, 2005, 「보존기간 재분류 지침」
- 국가기록원, 2007, 「각급기관 기록관 설치·운영 지침」
-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
- 국가기록원, 2007, 「기록관리표준 이행확산도구 개발·별책 2 기록관리현황 평가도구」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2007, 「단위과제 보존기간 책정·조정 지침」
- 국가기록원, 2008, 「2008년도 기록물 관리 지침」
- 행정자치부, 2004, 「정부업무관리(BRM)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_ISP사업완료요약보고서」
- 김명훈, 2009,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기록학연구』 19, 한국기록학회.
- 류한조 2009, 「기록 콘텐츠 개발 모형에 관한 연구-건축 문화재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9권 제1호, 한국기록관리학회.
- 유혜림, 2007, 「전자기록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

- 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승억, 2006,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한국기록학회.
- 이승억, 2008, 「전자기록의 평가선별에 관한 몇 가지 검토」, 『기록인』 4, 국가기록원.
- 천권주·김효민, 2009, 「기록물 보존가치 재평가 최적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2009년 6월 월례발표회 발표문, 한국기록학회.
- Cook, Terry,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 Hackman, Larry J and Joan, Warnow-Blewett, 「The Documentation Strategy Process : A Model and a Case Study」, American Archivist, Vol.50, Winter 1987.
- Pearce-Moses, Richard, 2005, 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http://www.archivists.org/glossary/term_details.asp?DefinitionKey=630 {2009, 12. 18 참고})
- Samuels, Helen W., 1991-92, 「Improving Our Disposition: Documentation Strategy」, Archivaria 33(Winter 1991-92), 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ospintro.htm> {2008년 11월 6일 참고}
-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osp-subject.htm> {2008년 11월 6일 참고}

Edited by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and Frank
Upward, 2005,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 p. 125.
Ham, F. Gerald 저, 강경무, 김상민 역,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진리탐구, p. 32.

ABSTRACT

Complementary Methods of the Records Reappraisal Policy

Ryoo, Sinae · Lee, Seung-Hwi

Reappraisal is a process to examine the past appraisal decision. The reappraisal theory is based on two facts: first, appraisal decision can not be always correct, second, the archival value is changed by time.

So, reappraisal policy should complement the limit of the first appraisal results, which is based on the function analysis. To achieve this goal, it is needed to use different process and methods from the first appraisal. However, existing reappraisal system does not meet the essential purpose of reappraisal.

This article examined the limit of the reappraisal policy. To complement the problems, this article set a direction and suggested the subject-based reappraisal.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thods to document the society of the generation.

Key words: reappraisal, subject-based appraisal, appraisal committee, records disposal schedule

